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4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. 03. 30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기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,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의 주체는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로 확대하여 해당 조문의 위치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 현행대로 함(안 제8조제5항).
- ‘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’는 내용으로 제8조의4를 신설함(안 제8조의4).
- 조례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안 제2조제2호).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

2. 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

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 현행대로 한다.

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)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(이하 ‘임대료조정위원회’라 한

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2. 법학·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4.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5.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업무책임자
6.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</p> <p><신설></p>	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p> <p>2. 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</p>

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

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둔다.

1. 입주자 대표

2. 장기전세주택 소재지
지역구 시의원

3.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
4.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

5.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

제8조(서울공공주택 공급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⑤ (생략)

바에 따른다.

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

<신설>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4(공공주택임대료
조정위원회)

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
자는 서울공공주택의
임대가격 조정을 위하
여 15인 이내의 다음
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으로 구성하는 공공주
택임대료조정위원회(이
하 ‘임대료조정위원회’
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
소속 시의원

2. 법학·경제학 또는 부
동산학 등을 전공하고
대학이나 공인된 연구
기관에서 부교수 이상
또는 이에 상당하는
직에 재직한 사람
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
사 자격을 취득한 후
6년 이상 종사한 사람

4.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
사·세무사·법무사 또
는 공인중개사로서 주
택임대차 관계 업무에
6년 이상 종사한 사람

5.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
를 담당하는 4급 이상
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

택도시공사 등 공공주
택사업자 소속 업무책
임자

6. 그 밖에 주택임대차
관련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

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
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
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
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
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
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
규칙으로 정하는 바
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

2. 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

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4(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)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(이하 ‘임대료조정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 2. 법학·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 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 4.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 5.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업무책임자
 6.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공공주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<u>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u></p> <p><u>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<u>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</u></p> <p>2. <u>“리모델링지원구역”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</u></p>

<신 설>

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을 말한다.

제8조의4(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)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(이하 '임대료조정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
2. 법학·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
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4. 감정평가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
5.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

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업무책임자

6.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